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바, 신체조건과 체력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체조건을 두어 임용을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직원 임용에 있어 신체
조건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정직기간 동안 교정공무원에게는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반면 민영
교도소 직원에게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민영
교도소 직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영교도소 직원 정직 시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5. 2. 18. ~ 3. 31.(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중 “3분의 2를 줄이며”를 “전액을 감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민영교 도소등의 직원의 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8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 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략)	제17조(직원의 임용 자격 등) ① ----- ----- <u>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u>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징계처분) ① (생략) ②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정직·감 봉·견책으로 하되, 정직은 1개 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 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 고 보수의 <u>3분의 2</u> 를 줄이며, 감 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u>3분의 1</u> 을 줄 인다.	제21조(징계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전액을 감하며</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교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3805